

#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

- 규제개혁 보고서를  
중심으로 -

이 준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I. 서 설

### II. 영국 규제개혁의 개관

1. 영국 규제개혁의 주요 보고서
2. 규제개혁보고서 제안의 시행 효과
3. 분야별 규제개혁 현황
4.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

### III. “Less is More”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개 요
2. 규제의 5가지 원칙(The Five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3. 규제에 관한 8가지 제안
4. “One In, One Out” 방식에 의한 규제개혁
5.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

### IV. “Hampton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개 요
2. “Hampton보고서”의 권고 내용
3. “Hampton보고서”의 특징 및 이후의 변화

### V. 규제개혁을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

1. 정부 · 사업체간 의사연락의 효과적 운영
2. 행정비용의 감소
3. 정부부처 및 의회간의 제휴
4. Code of Practice의 운용

### VI. 요약 및 결론

## I. 서설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주요 법률의 제정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영국의 규제개혁에 있어서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 이외에,<sup>1)</sup>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검토의 결과물로서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규제개혁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즉, 규제정책의 집행이나 규제입법의 제정에 앞서서 매우 체계적인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시행하고,<sup>2)</sup> 정밀한 연구검토를 선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각종 평가도구 개발도 당연하게 수반하게 된다. 이외에도 과감한 정부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집중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sup>3)</sup>

- 1) 영국에서 있어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에 관한 최초의 법적 시도라고 평가받는 법률은 1994년에 제정된 「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이다. 동법은 규제와 관련하여 주무장관에게 의회에 대한 법률개정안의 제출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거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정책을 근거로 추진된 입법으로서 주무장관의 명령에 의한 법령개폐가 가능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영국정부는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정책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였고, 규제개혁의 정책집행에 관한 주무장관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 「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시행 이후에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의 규제개선집행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에 의한 각종 규제개혁보고서에 의하여, 동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다년간에 걸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다각도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경유하여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2) 영국에서 있어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에 관한 최초의 법적 시도라고 평가받는 법률은 1994년에 제정된 「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이다. 동법은 규제와 관련하여 주무장관에게 의회에 대한 법률개정안의 제출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거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정책을 근거로 추진된 입법으로서 주무장관의 명령에 의한 법령개폐가 가능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영국정부는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정책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였고, 규제개혁의 정책집행에 관한 주무장관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 「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시행 이후에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의 규제개선집행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에 의한 각종 규제개혁보고서에 의하여, 동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다년간에 걸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다각도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경유하여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3) 영국 규제입법상 정책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제도는 정부가 공공부분, 민간부분, 제3의 영역을 불문하고 어떤 분야에는 규제하고 개입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규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규제에 앞서 정책영향 평가를 하는 이유는 왜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고, 새로운 개입(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실제 제안된 방식이 어떠한 비용 및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원래 의도되지 않았던 효과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정책영향 평가 제도는 한 순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continuous process)로 정의되어 있다. 즉 초기단계에서 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대중의 의견을 묻고, 정책을 결정한 후, 그 정책 결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그 결과에 새로운 문제점과 대안이 제기된 경우 다시 위 과정



이렇듯 영국의 규제개혁은 과감한 정책결정과 더불어, 내실있는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규제의 질적인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시사점이 두드러지는 국가가 영국의 규제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인 면을 제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재무성(HM Treasury)과 사업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이하 BERR)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발간되었던 각종 보고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재무성과 BERR의 보고서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영국 규제개혁의 발전과 미래를 주도하고 있다. 재무성과 BERR의 보고서 중에서 2006년 규제개혁입법 뿐만 아니라,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보고서는 BERR의 규제개선TF팀(Better Regulation Task Force)에 의하여 작성된 “Regulation - Less is More :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A BRTF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보고서(이하, “Less is More” 보고서)와 영국 재무성(HM Treasury)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른바 “Hampton보고서”라고도 일컬어지는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보고서(이하, Hampton 보고서)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가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과 그 시사점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Hampton보고서”에 의한 규제(Regulation)의 개념

규제(Regulation)란,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체가 법에 저촉되고 관련된 지원금 또는 보조금 기타 관련 계획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 계획에 의하여 부담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치라고 요약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규제에 포함된다.

- 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EU규정
- ②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의회의 법령
- ③ 제정법적인 규정

을 반복하는 형태이다. (노혁준,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I) - 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8), 24~25면)

- ④ 장관이나 정부부처에 의하여 제정법상 효력을 가지는 규칙, 명령, 계획, 규정 등
- ⑤ 중앙정부기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면허와 허가
- ⑥ 제정법상 효력을 가지는 Codes of Practice
- ⑦ 제정법상 효력을 가지는 가이드라인
- ⑧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산업계 및 실무계에 의한 Codes of Practice, 가이드라인, Self-Regulation, 업종별 협정
- ⑨ 중앙정부에 의한 정관(Bye-Law)
- ⑩ 정부의 지원이 없는 Codes of Practice, 가이드라인
- ⑪ 정부의 지원이 없이 자기규제 및 업종별 협정을 포함한 사업체들간 자발적인 협정
- ⑫ 중앙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지방정부에 의하여 발생되는 의무
- ⑬ 보통법상으로 발생하는 의무

## II. 영국 규제개혁의 개관

### 1. 영국 규제개혁의 주요 보고서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진행은 세계화에 대한 도전을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혁신을 증진한다는 영국의 전반적인 경제적 목표의 중심을 이룬다. 또한 이러한 규제개혁의 진행은 선택과 경쟁(Choice and Competition)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와 제3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관료주의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국의 규제개혁에 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2개의 보고서에 주목하여야 한다.

규제개선TF팀(Better Regulation Task Force)의 “Less is More” 보고서<sup>4)</sup>는 정부가 정부 스스로 부담시키는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s)에 대하여,

4)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gulation - Less is More :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March 2005)



이를 평가하여 경감시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을 공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2006년 12월에 단순화 프로그램(Simplification Program)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0년까지 상당한 부분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평가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화 계획은 각각의 분야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이고 의미있게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한편, 2005년 3월에 발표된 이른바 “Hampton 보고서”<sup>6)</sup>에 의하면, 규제를 실행하는 규제당국과 지방정부는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규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2. 규제개혁보고서 제안의 시행 효과

영국은 앞에서 언급한 2개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로, 성실하고 순응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당국은 공정하고 부담이 적게 가하는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효율적이고 명확한 목표설정이 이루지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의한 규제수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로,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의 시행에 의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의 감소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수혜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즉, 영국정부는 규제개혁과 공정한 사회의 발전은 상호간에 배타적이지 않다고 서로 상호신뢰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5) 행정부담에 대한 영국의 평가결과기록은 상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어느 분야와 어떠한 규제영역에서 심각한 행정부담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행정부담에 관한 평가도구는 “우선적으로 부담되는 비용(underlying costs)”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비용을 보완하고, 위험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위험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한정적인 노력과 자원을 높은 위험이지만 통제가능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규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n Commission)의 보고서인 “Risk, Responsibility and Regulation : Whose Risks is it Anyway?”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전개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정보 공급에 있어서 어떠한 시기가 적절한 규제개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선집행국(BRE)의 중간보고서와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6) Philip Hampt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March 2005)

나 규제개선집행국(BRE)에서 수행된 연구보고서<sup>7)</sup>에 의하면, 일반 대중들이 규제에 관하여 갖는 첫인상은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감정에 대하여 영국정부는 규제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이 사회발전과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운동을 시도하였다.<sup>8)</sup> 그 결과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과정을 통하여,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특히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도, 향상된 출산휴가, 소수집단의 권리보호 등과 같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독립된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Heritage Foundation의 2007년 경제자유화에 관한 보고에서 영국은 157개 국가 중에서 6번째의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영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OECD에 의하면, 영국은 호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시장 규제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세계의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대한 장벽은 극소화되어 있고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세계에서 3번째의 낮은 장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 ③ 최근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조사에 의하면, 영국은 175개 국가 중에서 6번째의 순위를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 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주목할 만하다.

- ① 조세기록을 갱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에 반하여, 요즘에는 온라인상에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되었다.

7) Warning : Too Much Information can Harm, joint Better Regulation Executive and National Consumer Council report (2007)

8) 특히, BERR의 “Next Steps on Regulatory Reform (July 2007)” 규제개혁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인과 단체는 규제가 제공하는 예측가능성과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평가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규제없이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서, 좋은 품질의 규제로부터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된다. 런던시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금융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규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경쟁법은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규제에 의하여 건전한 영업장에서의 수익을 피용자들은 누리게 된다. 그들은 충분한 보수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개개인들에게는 그들이 이용하게 되는 공공서비스가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혜택을 얻게 되고, 그들이 소비하는 식품들은 안전하게 된다.”



- ② 사업자등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용이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년 28만 개의 사업체<sup>9)</sup>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 3. 분야별 규제개혁 현황

#### (1) 소비자보호에 관한 분야

시장과 과학기술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법시스템 또한 이러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보호의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영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의 영역에 관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정책을 제공하려 하였고, 이러한 목적은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 및 화폐가치 그리고 고품질의 상품과 광범위한 선택권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뿐만 아니라, 영국의 사업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행 규제영역은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에 도전하면서 수십년간에 걸쳐서 발전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원인의 결과로서 규제는 10억 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행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100개 이상의 입법들에 의하여 복잡하게 되었으며, 때때로 서로간에 충돌을 발생시키고 비탄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08년 봄에 보고서를 통하여, 소비자보호 분야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① 현존하는 입법의 단순화에 관한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를 유지시키면서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고시켰다.
- ② 높은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 및 사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시행을 합리화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 ③ 소비자의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소비자 정보의 효율성에 관하

9)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or National Accounts에 의하여 정의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행정의 공적 분야를 제외한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업체 뿐만 아니라, 자선단체(Charity)와 자발적인 영역의 조직들도 포함된다. 한편으로, 순응 사업체 (Compliant Business)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규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특히 정부와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여 규제개선집행국(BRE)과 국가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의 공동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 (2) 보건과 안전에 관한 분야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체들은 그들의 사업장에 있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평가하여야 할 법적 요건들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sup>10)</sup> 일부 규제들은 고려하고 평가해야 할 특정 위험(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화학물질 등을 운반하는 등)에 관하여 대략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록은 언제나 검토가능하게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보건안전집행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은 소규모 회사들이 규제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sup>11)</sup> 그러나 일반 사업체들과 심지어 전문 자문가들도 보건안전집행국(HSE)이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에서 관련된 주요 핵심적인 사안들을 추출하기가 어려웠고, 세세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여기는 실정이였다.<sup>12)</sup> 따라서, 산업단체 및 근로자 대표와 협조체제 하에 있는 보건안전집행국(HSE)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위험평가에 관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규제대상자들이 혼란스러워

10) 보건과 안전에 관한 보호는 영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가 시행된 1974년 이후로 보호수준은 상당히 증진되었는데 치명적인 불구를 발생시킨 사고는 76%, 심각한 상해는 68%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시 되는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완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체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한된 영역과 분야에서의 규제완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체들(예를 들어서, 사무실, 상점, 부동산업 등)에 있어서는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담의 문제가 증가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보건과 안전에 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관련된 사안들의 복잡성에 관하여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1) 보건안전집행국(HSE)은 이미 소규모 회사와 위험요소가 낮은 영역에 대한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험평가예시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보건안전집행국(HSE)의 지원을 받는 정부는 위험요소가 낮은 사업체의 입장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사업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에 현대 산업환경에서 보건과 안전에 관한 결과를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2)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의 상황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즉, 언론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하면,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생활을 통제하는 복지국가(nanny state)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한다. 따라서 일상의 행동에 대하여 사소한 관료주의적 장벽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언론 등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은 보건과 안전에 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한다. 그러나 보건과 안전에 관한 영역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궁극적으로 발전된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며 이러한 두가지 상황이 충돌함으로써 적절한 규제개혁의 최적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며 부담스럽게 여기는 다양한 법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이러한 예시에서는 보건과 안전에 관한 위험평가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문건을 통합하고 있었다. 보통의 경우 위험평가요건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1년에 14시간이 소요된다.<sup>13)</sup> 그래서 보건안전집행국(HSE)의 최종적인 목표는 평가예시를 이용하는 사업체들을 위하여 1년에 10시간 이하로 최소 3분의 1가량을 줄이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업체들에 대한 규제부담의 감소를 추진하였다. 보건안전집행국(HSE)은 이러한 조치를 전체 사업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6개의 경제분야(소매업, 도매업, 호텔, 교통, 자동차거래, 재산 및 사업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시도하려하고 있다.

### (3) BERR에 의한 규제개혁

BERR의 규제는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며,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체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BERR은 회사법, 고용법, 소비자법, 경쟁법, 에너지법 등의 집행과 관리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과거 DTI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담을 감소시켜서 호평을 받은 단순화계획을 발표하였었다. 즉, 고용법상 단순화회계 보고,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보고(이른바 Gibbons review<sup>14)</sup>라고 한다), 사업체의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불공정한 상관행 지침에 관한 시행 그리고 우선적으로 “작은 것을 우선으로 생각(Think Small First)” 하는 원칙으로서 회사법의 대규모 통합인 회사법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계승하여 BERR은 규제개혁과 단순화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 ① 고용법(Employment Law)

BERR이 의회에 제출한 단순화계획에 관한 법안은 Gibbons Review에서 제시된 노동분쟁해결(workplace)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그런데, 과거 규제대상인 사업체들이 제출한 의견에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안이 가장

13)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영국의 사업체들에게 부담되는 행정비용은 1년에 20억 파운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규모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최근의 Forum of Private Business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회사들은 보건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14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mall Business Service에 의하면 보건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14) Michael Gibbons, Better Dispute Resolution - A Review of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in Great Britain (March, 2007)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BERR은 명확성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규제내용의 홍보에 관련된 캠페인을 시도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과 고용인 및 피고용인에 대한 규제수단 등을 구체화하였다.

#### ② 소비자법(Consumer Law)

규제대상인 사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불공정상관행 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BERR은 조사감독 및 시행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행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유지시키면서 규제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③ 회사법 (Company Law)

회사법에 대한 작업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회사법 현대화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EU회사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수행되고 있으며, 소규모회사에 대한 회계요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4.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에 관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평가된다. 즉, 국제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도전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규제환경은 세계 경제의 선두국가 중 하나로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기업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 ① National Audit Office의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영국기업의 85%는 정부에 의한 규제부담의 감소에 성공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거의 신뢰할 수 없다고 나타났으며, 80%는 현존하는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 ② 영국의 Business Confidence Monitor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응답자의 59%가 규제요건이 다소 또는 상당히 12개월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2006년 말까지 거의 변



하지 않았다.

- ③ 매년 사업체의 거의 절반이 규제순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외부자문을 얻고 있다. 사업체들은 규제순응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최소 14억 파운드를 매년 지출하고 있다.
- ④ 규제개선집행국(BRE)에 의하여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sup>15)</sup>에서는 규제대상으로 되는 사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규제변화의 단계와 사업체의 부여되는 높은 수수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대상인 사업체들이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관심사 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기업이나 협회로부터의 자문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국의 규제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되지 않은 분야와 개선된 규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이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규제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Ⅲ. “Less is More” 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개요

BERR의 규제개선TF팀(Better Regulation Task Force)에 의하여 작성된 “Regulation - Less is More :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A BRTF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보고서 (이하, “Less is More”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 의하여 규제의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s)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sup>16)</sup> 정부의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15) Ipsos MORI, Businesses' Perceptions of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Executive (2007)

16) “Less is More”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서 행정부담에 대한 감소방안의 논의는 네덜란드식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원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덜란드식 접근방법은 규제개혁에 있어서 그 시작을 행정부담감소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부담에 관한 수치를 행정비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계량화하여 수치화시키고 이를 기초로 규제개혁의 방향과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규제대상자인 사업체들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수치로 계량화한 후에, 이를 국가 예산과 예산주기를 연동시킴으로써 감소시키려는 양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관련 정부부처 및 독립적인 자문기구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경우에 규제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복잡하고 부담이 되는 규제는 단순화시키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One In, One Out” 방식의 활용을 규제개혁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규제의 5가지 원칙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몇가지 제안을 권고하고 있다.

## 2. 규제의 5가지 원칙(The Five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 (1) 비례성(Proportionality)

보고서에서는 규제(정책)에 관하여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여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규제에 의하여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조치는 부과된 위험 및 확인되어 최소화될 수 있는 비용과 상응하고 서로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책해결은 인식된 문제점과 위험에 비례성을 가져야 하고, 부과된 비용에 대한 순응을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지켜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대안적 방법들은 단순하게 처방적인 규정이 아니라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안적 방법은 적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 ② 규제는 영국에 있는 사업체의 99.8%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 비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Think Small First”<sup>17)</sup>라 한다)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17) “Think Small First”의 개념과 취지가 가장 잘 반영된 분야가 회사법에 있어서 기업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기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해왔다. 영국 통상산업부는 1998년 3월에 영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목적 하에 기존의 회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회사법 개정위원회 내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1962년 젠킨스 위원회(Jenkins Committee)에서 회사법 개정사항을 검토한 이래 근 40년만에 회사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개정위원회의 추진위원회는 1999년 2월에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현대적 회사법 - 전략적 토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다양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3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2001년 7월에 최종 보고서 2권을 통상산업부에 제출하였다. 이 최종보고서 제 1권에는 개정위원회가 세웠던 세 가지 기본 개정방향, 즉 (i) 소규모회사 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 (ii) 포괄적이고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회사 지배구조(An Inclusive, Open and Flexible Scheme of Company Governance), (iii) 탄력적이고 순발력 있는 입법기관 구조(A Flexible, Responsive Institutional Structure)가 설명된 다음, 구체적인 제안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 2권에는 실제 위 개정사항들이 반영된 법률안과 함께 폐쇄 주식회사를 위한 모델정관이 담겨 있다. 여기서의 “Think Small First”의 개념은 소



- ③ EC지침은 내용상 또는 효력상 수정이나 개정없이 영국의 국내법상으로 그대로 이전되어야 한다.
- ④ 집행되는 영역은 집행에 의하여 부담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해야 한다.
- ⑤ 집행은 가능한 한 징벌적인 성격보다는 교육적인 성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책임성 (Accountability)

규제당국은 각종 규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공공의 감시에 순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위하여 규제당국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규제제안은 모두 일반 공공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이유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① 규제당국과 집행자는 그들이 내리는 결정과 판단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및 지표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며, 일반 규제대상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가능해야 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③ 규제당국은 관련부처 및 의회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관성 (Consistency)

규제당국의 규제는 규정과 기준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공정하게 일관성있게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규제당국은 관련부처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양자간 제휴된 방식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법과 EU법 그리고 국제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규제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규제 또는 제안될 규제와 서로 조화를

규모 폐쇄회사에 관한 개정에 관련되어 설명된다. (Small and Private Companies, 제4장). 개정 위원회는 "Think Small First"의 기치 하에 소규모 폐쇄회사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제안에 따르면 폐쇄회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감사나 행정임원 (company secretary)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한 폐쇄회사에서는 회계보고 및 감사절차도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노혁준, 전계서, 29~30면)

이루어야 한다. 한편으로 규제당국은 외국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관성있는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관성있는 규제를 추구하는 이유는 규제대상자들에 대하여 안전성과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규제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와 준수율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4) 투명성(Transparency)

규제당국은 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하면서도, 규제대상자 친화적으로 유지하고 개방된 절차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 확보와 명확한 정책목적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간의 의사연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연락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제제안이 제시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고려되어 효과적인 자문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 ① 의사연락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소한 12주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② 규제내용은 명확하고 단순하여야 한다. 평범한 언어로 기술된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시행되기 12주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 ③ 규제대상자들은 법과 명백한 최선관행에 의하여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의 제공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수방법에 관한 모범을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 ⑤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인식되게 전달되어야 한다.

#### (5) 대상성(Targeting)

규제는 발생된 문제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집중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부수효과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규제의 대상성에 대한 집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탄효과적 접근(Scattergun Approach)은 피해야 한다. 즉, 규제당국은 목적 지향적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규제자와 규제대상자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은 목적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규제대상에 대한 대상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같은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제



공은 다양한 집단의 수요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당국은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반자들의 행동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점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효과적인지에 관하여 구조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규제는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 3. 규제에 관한 8가지 제안

#### (1) Standard Cost Model의 채택

전체적인 규제부담에 관하여 조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① Standard Cost Model을 채택하여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일정한 기한까지 영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sup>18)</sup>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일정한 기한까지 (평가결과의 이용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바로 그 직후) 행정부담의 감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③ 일정한 기한까지 구조의 조직적인 구축과 제시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

#### (2) 단순화계획(Simplification Plan)의 추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축

내각의 규제영향기구(Regulatory Impact Committee)는 각 부처의 자문을 통하여, 사업체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단순화계획의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제안이 가능하게 하도록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업체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제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증거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각 부처는 90일내에 그들이 제안한 조치의 진행을 설명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답변해야 한다.

#### (3) 지속적인 단순화 프로그램의 진행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 관련된 모든 부처에 대하여 단순화되는 사안과 폐지 및 통합 과 개혁된 규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순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포함해야 한다.

18) 사업체가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행정비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그래서 행정부담은 사업체가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의 일상적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을 감소시키는 제안

② EU지침의 시행, 특히 조직구조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재확인

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단순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부처는 모든 주요 입법과 지속적인 단순화 프로그램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사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각 부처의 단순화 프로그램은 규제책임에 관한 패널(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의 검토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 (4) 규제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 보완

중요한 규제개혁관련 제안에 있어서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단순화 보상조치(Compensatory Simplification Measure)의 고려를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단순화조치에 대한 고려를 해 본 결과, 규제영향평가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5)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운영에 관한 검토

정부는 긴급한 경우에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에서 미리 예정하고 있는, 운영에 관한 검토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하는 이유는 규제개혁법의 적용범위가 규제개혁명령(Regulatory Reform Order, RRO)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당한 수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적용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러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RRO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단순화추진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역에 까지 확대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검토는 RRO가 적용되는 과정과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조사과정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 (6) 의회에 대한 기간의 제공

정부는 탈규제법안(Deregulation Bill)이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에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 (7) 규제의 동시개시일(Common Commencement Date)의 연장

정부는 다른 정책영역에 대하여 규제의 동시개시일(Common Commencement Date)의 이용을 확장해야 하며, 새로운 규제뿐만 아니라, 단순화 조치의 실행을 포함시켜야 한다.



### (8) 규제비용의 평가도구 개발

정부는 규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누적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 2년간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예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에 관한 누적적인 영향과 전체비용을 판단하여 전체적인 예산의 책정에 있어서 규제예산의 책정을 평가를 해야 한다.

## 4. “One In, One Out” 방식에 의한 규제개혁

### (1) 개요

“Less is More” 보고서에서 추구하는 기본적 규제개혁의 방법론은 “One In, One Out”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를 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른바 “One In, One Out” 방식을 보고서에서는 채택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One In, One Out” 방식은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으로서 설명된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관하여 또는 보다 덜 중요한 사안에 앞서서 보다 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고려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를 수행하는 기구나 단체는 보다 더 중요한 규제를 선택하여 수행하려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가 없어도 상관없거나,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도 무방한 사안에 관하여 이를 취소 선택하여 수행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One In, One Out” 방식은 규제에 있어서의 선택을 강조하고 주목한다. 정부부처에서 새로운 입법을 원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법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되는 규제나 제도를 검토하여 새로운 입법과 동시에 불필요한 기존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One In, One Out” 방식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개념으로서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을 추진하게 된다.

### (2) 단순화계획의 필수요소

본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단순화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 ① 탈규제화(Deregulation)

실정법상에서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사업체와 같은 규제대상자들에게 이전 규제체제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활동의 자유를 제공한다.

### ② 통합화(Consolidation)

분산되고 있는 규제들을 보다 더 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규제들을 통합하여 실정법상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규제집행자나 규제대상자들에게 규제에 대한 이해도와 투명성을 증진시켜서 규제대상자의 규제준수 비용을 감소시킨다.

### ③ 합리화(Rationalisation)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이념 또는 원칙 등과 같이 (예를 들면, 거래를 할 때는 부당하게 해서는 안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통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수평적 입법(Horizontal Legislation)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수직적 입법(Vertical Legislation)을 대체하고, 이를 통하여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규제를 조정내지는 폐지한다.

## (3) 정부에 대한 제안

본 보고서에서는 설명하는 “One In, One Out” 방식을 시도하는 목적은 정부부처와 사업체에 대하여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규제문화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규제문화의 변화는 규제개혁을 함으로써, 주무장관이나 개별 규제기관의 위원회가 규제의 시도와 결과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메커니즘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만약에 이것(규제)이 실제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갖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특수한 규제환경과 규제상황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최선으로 적용할 것인가는 각각의 개별 조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안에 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방법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된다. 즉, 규제의 메커니즘에 관한 의문과 고민은 개념필수적으로 규제의 전체적인 사안을 조정 및 평가하여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해야 할 규제사안의 우선순위의 결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따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제프로그램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체계의 상당한 수의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정부에 제안한다.



① 단순화계획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의 실행

정부는 단순화계획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인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 본 보고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제안이 없고, 규제완화를 추구하기에는 지나치게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의 단순화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계획의 진행 이전에 단순화개념이 정부부처의 문화에 흡수되고 규제과정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② “One In, One Out”의 방식의 채택

정부는 “One In, One Out”의 방식을 규제에 적용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새로운 규제개혁의 조치와 현행제도 및 규제의 단순화계획 간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운영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행정부담의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비용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고, 예산집행과 구체적인 계획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에 대한 사후검토의 강화

정부 및 규제당국은 EU에 의한 법령이 영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검토를 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규제실행에 관하여 빈도 높은 사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각종의 조치가 기대한 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와 비용편익이 예측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발행했는지의 여부 및 단순화계획의 추진이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결과는 향후 정책결정과 단순화계획에 관련된 제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의 구축

본 보고서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요구한다. 비용이 심각하게 수익을 초과하거나 집행과 준수에 관한 일련의 조치가 없어서 명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개선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전적인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면서 규제에 관한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는 탈규제법안(Deregulation Bill)과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의 중요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게 된다. 양 법안은 제도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충분한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 ⑤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역할 배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확인하고 검토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료주의에 대한 사업체들의 불만은 대부분이 특정적이지 않고, 정부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단순화계획을 통하여 규제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체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점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 5.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

본 보고서에서는 규제의 원칙과 규제에 대한 제안 그리고 구체적인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본 보고서에서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향후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제시한다.

첫째로, 규제일몰제(Sunsetting)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일몰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여 사용하려 할 것이고, 특히 새로운 입법의 영향과 실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명한 판단에 의한 규제일몰제의 활용은 향후 단순화계획의 추진이 부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에 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규제예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조치와 목적은 전체적인 규제예산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규제에 관한 정책비용은 행정비용<sup>19)</sup>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비용측정을 위한 방법 또한 개발이 부족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다음 조치로서 정부는 규제의 누적적인 비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9) 중앙정부의 규제를 통하여 부담되는 정보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행정행위의 비용을 의미한다. 행정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업무를 완수하는데 요구되는 내부적인 시간비용 (Internal Time Costs) : 임금×시간, ② 간접비용(Overhead Costs) : 내부적인 시간비용의 비율로서 산출, ③ 외부적인 용역 (External services), ④ 외부적인 상품 (External Goods). 행정비용의 전체 단위는 전체 행정비용에서 발생하는 양(Quantity)에 의해서 제공으로 증가한다. 행정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1회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반복하여 발생하는 비용만 포함된다), ② 교육비용 (Training Costs) : 이러한 비용은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IV. “Hampton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개요

Hampton 보고서는 영국이 수행해 온 많은 규제성과에 대하여, 이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체들에게 부담되는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감소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의 규제개혁성과가 탁월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규제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율을 창출시킬 수 있고, 행정처리에 관련된 많은 양식과 중복되어 이루어지는 정보요청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과도한 조사 등이 부정적인 규제개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장 높은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더 많은 규제 부담을 부여하고, 규제순응도가 높고, 모범적으로 규제에 순응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규제 부담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Less is More” 보고서에서 향후에 추진되어야 할 규제예산에 관한 사안의 일부로서 “규제비용”에 관한 개념적 구체화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다.

### 2. “Hampton보고서”의 권고 내용

#### (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초한 규제

모든 규제행위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① 조사(scrutiny)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 ② 과거에 있어서의 결과와 잠재적인 미래위험을 포함하여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이용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④ 통일성과 독립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단순하고 개량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⑥ 정적이면 안되고 동적이어야 한다.
- ⑦ funding decision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⑧ 규제위반 억제적 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⑨ 항상 무작위조사에 대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2) 타기관의 조사범위비율에 관한 확인

조사범주에 대한 위험평가를 제시할 때에는, 규제자가 합동조사가 제안된 다른 기관 및 합동으로 수행될 시에 조사범위의 비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규제당국의 자문제공

규제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규제대상인 사업체들에게 광범위하고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 ① 웹사이트 : 사업체들에게 그들이 확인하려는 정보를 개인정보화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온라인 또는 문서를 통한 뉴스레터 : 특정분야에 대하여 내용상 구성되어야 하고, 규제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규제당국과 세부적인 사안에 관련해서까지 의사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 (4) 규제당국에 의한 모니터링

규제당국은 규제대상자인 사업체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모니터링하여 규제당국에 의한 자문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5) 효율적인 자문의 수행

규제당국은 웹사이트에 의한 자문을 수행해야 하며, 규제대상자인 사업체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웹사이트를 구성하여야 한다.

## (6) 법원의 역할 강화

지금까지 정부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의 상한을 높이고, 법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벌금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안을 왔다. 이러한 제안은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규제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7) 양형지침의 보완

양형지침위원회는 규제위반에 있어서, 벌금의 수준과 경제적 수익에 관한 고려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8) 규제개선집행국의 벌칙에 대한 검토

규제개선집행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이하 BRE)은 보다 더 일관성 있고 형평성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칙에 대한 검토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행정벌(administrative penalties)에 대하여 중재 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않는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여, 한편으로 규제당국에 대하여 임시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벌칙에 대한 권한은 위반자가 장기간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경제적 수익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9) 규제개선집행국에 의한 벌칙집행의 검토

행정벌이 도입된 후 2년 또는 3년간 규제개선집행국(BRE)은 법원에 대항 항소가 효율적으로 취급되었는지에 관한 여부와 특별전문판사들로 구성된 규제중재판정 서비스(Regulatory Tribunal Service)가 항소에 관하여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sup>20)</sup>

(10) 벌칙에 대한 고려사항

벌칙에 대한 규제개선집행국(BRE)의 검토는 형사사범의 회복적 질서(관계수복적 사범)의 입장에서 얻게되는 사회적 수익을 고려해야 한다.

(11) 적극적인 동기부여장치의 실행

규제개선집행국(BRE)은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동기부여장치를 채택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당국은 국가규제포럼(National Regulatory Forum)을 통하여 규제에 관한 국가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12) 원칙과 권고의 적용범위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그들이 수행한 방식에 대하여 보다 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상의 원칙과 권고들은 규제당국의 모든 규제자들에게 적용되어

20)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산업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는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적으로 의견수렴이 강조되는 것은 정부 및 사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실무자들이 규제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더불어서 산업계와 실무계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관료주의적인 사안들이 무엇이며,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의견수렴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인력조정 그리고 전체적인 피드백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시기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권고들은 모든 규제자들의 평가와 자기평가에 대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규제개선집행국(BRE)은 규제자들이 이러한 원칙과 권고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감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규제개선집행국(BRE)은 모든 규제자들의 법적 의무에 대하여, 이러한 원칙들이 포함되는 범위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 (13) 보고서의 적용범위

규제개선집행국(BRE)은 본 보고서상 언급된 원칙과 관행이 보고서 내용 외의 규제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14) 행정서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규제개선집행국(BRE)은 행정서식에 관한 가이드라인(Form Design Guidelines)에 양식기준에 관한 사안을 위임해야 하고, 모든 규제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15) 분야별 사업자문그룹의 이용

규제당국은 분야별 사업자문그룹을 구성해야 하고, 새로운 서식이 도입될 때 각 각의 모든 단계에서 이들을 관련시켜야 한다. 사업자문그룹은 이러한 서식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16) 사업자문그룹에 대한 제안의 내용

문서의 행정처리는 규제영향평가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자문그룹에 대하여 서식에 의한 제안을 할 때에 모든 규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나타내야 한다.

- ① 요구된 정보가 다른 출처에서 이용되지 않을 것
- ② 요구된 정보가 회사의 위험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
- ③ 요구된 정보가 사업의 요건과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규제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을 것
- ④ 정보요청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 (17) 규제당국에 의한 정보전달 노력

규제당국은 사업체들의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정보전달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에 관형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정보를 이용하려는 단체와 서로 제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다른 규제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방되어야 한다.
- ③ 다른 규제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되어야 한다.

(18) 행정처리서식을 고안할 때 고려사항

새로운 행정처리서식을 고안할 때에, 모든 규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리서식을 완성하고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① 서식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② 서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③ 서식을 완성해서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행정처리서식은 서식의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추산하여야 하고, 소요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다는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는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가능한 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식형식에 흡수되어야 한다.

(19) 행정처리에 관련된 평가

규제당국이 발행하는 행정처리서식이 얼마큼 되는지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유지해야 하고, 연간보고서에 사업체가 서식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감소의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평가를 공표해야 한다.

(20) 규제개선집행국(BRE)에 의한 작업팀 구성

규제개선집행국(BRE)은 규제실무자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작업팀을 소집해야 하는데, 이 작업팀(working group)은 정보의 취급과 보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작업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

- ① 오직 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작업 데이터베이스가 폐쇄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광범위한 비용의 추산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 ②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명시적 비용(indicative cost)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에 있어서의 수익 등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시간적 척도로 설명이 가능한 보고서를 내각위원회인 “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sup>21)</sup>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내각수상에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는 영국의 규제개혁관련 기관으로서 1999년에 설립되었다. 주로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구체적으로 규제관련 정부기관의 역할수행을 감독하며, 일정액수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규제를 승인

- ③ “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에 의하여 조정된 시간일정에 맞추어 통합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규제기관의 규제분야에서 적용시켜야 할 정보를 규제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21) 규제개선집행국(BRE)에 의한 동의

일정하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나 IT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들은 규제개선집행국(BRE)이 그 실행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되지 못한다.

#### (22)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에 의한 가이드라인 작성

정보공유에 관한 규칙과 기준에 있어서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규제개선집행국(BRE)는 규제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정보보호에 있어서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에서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시행해야 한다.

#### (23) 규제영향평가에 있어서의 유용성 평가

모든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는 규제비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된 유용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어느 규제기관이 규제를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
- ② 바람직한 규제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스템, 감독, 벌칙 등의 범위
- ③ 조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용되는 위험평가의 전체적 개요
- ④ 규제도입시와 규제시행중에 제공되는 자문의 내용과 출처(sources)

#### (24) 새로운 규제기관의 추가에 대한 검토

규제개선집행국(BRE)은 새로운 규제기관의 추가(확립)가 고려되는 경우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BRE는 현재 존재하는 규제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기관의 추가를 반대하여야 한다.

#### (25) 규제실행의 원칙(Principle of Regulatory Enforcement)

새로운 정책과 규제의 운영은 Hampton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원칙(Box 2.2)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제개선집행국(BRE)의 승인없이 새로운 규제기관이 추가될 수 없다.

하고, EU법령에 의한 지침과 내용을 국내법으로 승인하거나 실행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사안을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Hampton 보고서 Box 2.2

※ 규제실행의 원칙(Principle of Regulatory Enforcement)

- ① 규제시스템 전체에 있어서 규제당국은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하여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광범위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당국은 규제기관들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유효성과 효율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③ 규제당국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쉽게 실행가능하고 이행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규제방안이 제시되었을 때에 이에 관하여 자문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합리적인 근거없이 조사와 감독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 ⑤ 규제대상자들인 사업체들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끔 해서는 안되고, 동일한 정보를 1번 이상 제공하게 해서는 안된다.
- ⑥ 지속적으로 규제위반을 발생시키는 사업체들은 신속하게 조사·확인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효과있는 제재가 취해져야 한다.
- ⑦ 규제당국은 권위있고 이용가능한 자문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⑧ 새로운 정책이 전개되는 경우에, 새로운 정책들이 현존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떻게 실행될 수 있고, 부여되는 행정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⑨ 규제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은 적절한 규모와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규제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규제기관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 ⑩ 규제기관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보호범위가 명확한 경우에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6) 정보수집에 관한 제안

규제영향평가(RIA)에 있어서 집행평가(Enforcement Assessment)의 일부로 수행되는 정보수집은, 제안한 자들이 규제기관들로 하여금 이용가능하도록 모든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해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수요에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정보수집에 대한 수익이 정부나 사업체에 대한 비용보다 초과한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리양식이나 정보수집의 메커니즘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수집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평가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27) Table of Eleven에 대한 평가

규제영향평가에서 집행평가의 일부로서 수행해야 할 것중의 하나로서, 규제당국은 규제준수의 가능성 및 Table of Eleven에 의하여 구축된 전략에 관한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 ※ Hampton 보고서 Table of Eleven

Table of Eleven은 규제의 준수를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가 준수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제안된 규제의 11가지 측면을 고려하며, 각각의 측면은 준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된다. 어떻게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려하는 경우, Table of Eleven은 규제가 가능한 한 자기집행적(Self-Enforcing)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준수가 감소되는 영역을 조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의미를 제공한다.

Table of Eleven은 다음과 같다.

#### - 동시다발적인 측면의 준수

- ① 규제에 대한 지식
- ② 준수에 대한 비용과 위반에 대한 수익
- ③ 규제에 대한 사업체와 일반대중의 수용 정도
- ④ 규제대상단체의 자연적인 순종과 충실성
- ⑤ 비공적인 감독의 정도

#### - 감독의 측면

- ⑥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규제위반 및 준수에 대한 보고 가능성
- ⑦ 조사(검사)에 대한 가능성
- ⑧ 탐지에 대한 가능성
- ⑨ 조사(검사)자에 대한 선택성

#### - 제재의 측면

- ⑩ 제재의 기회
- ⑪ 제재의 엄격성



(28) 규제기관의 통합

향후 2년에서 4년에 걸쳐서 63개의 국가기관 중에서 31개의 기관을 다음과 같은 7개의 분야를 규율하는 기관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 ① 건강안전부(an expanded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② 식품기준청(an expanded Food Standards Agency)
- ③ 환경청(an expanded Environment Agency)
- ④ 소비자거래기준청(a new Consumer and Trading Standards Agency)
- ⑤ 농촌지역검역국(a new Rural and Countryside Inspectorate, the new integrated agency)
- ⑥ 동물보호검역국(a new Animal Health Inspectorate)
- ⑦ 농산품검역국(a new Agricultural Inspectorate)

(29) 기관통합에 대한 제언(기업조사사무국)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산하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기업조사사무국(Companies Investigation Branch, CIB)은 유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파산청(Insolvency Service Agency)로 통합시켜야 한다.

(30) 신설 기관에 대한 기준 제시

새로운 설립될 소비자거래기준청(Consumer and Trading Standards Agency)은 식품에 관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의 권한과 유사하게 거래기준에 관한 권한(식품과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안은 별도로 하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31) 부처통합의 주도기관

규제개선집행국(BRE)은 정부간 부처통합의 절차와 규제 또는 관련 부처간 통합 조건에 관한 설정 및 결정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2) 국가규제포럼(National Regulatory Forum)의 구성

규제개선집행국(BRE)은 지방당국과 국가규제기관 그리고 정책부서 대표자로 구성된 국가규제포럼(National Regulatory Forum)을 구성해야 한다.

(33) 국가규제포럼(National Regulatory Forum)의 업무

국가규제포럼(National Regulatory Forum)은 구성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업무에 관한 조정의 증진
- ② 중앙 또는 지방으로 공급되는 중앙연락체계와 일반서비스에 관한 협정의 진행
- ③ 위험평가에 관한 협정의 동의와 지방당국의 규제기관들이 규제하는 범위에 대한 감독

#### (34) 규제개선집행국(BRE)의 설립

정부는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규제실행의 원칙(Principle of Regulatory Enforcement)에 위반하는 규제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책임을 당해 기관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정부조직에 규제개선집행국(BRE)을 설립해야 한다.

#### (35) 규제개선집행국(BRE)으로의 업무연락 확보

정부는 현재 규제영향국(Regulatory Impact Unit)에 의하여 시행되는 각종 기능과 업무가 규제개선집행국(BRE)에 적절하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3. “Hampton보고서”의 특징 및 이후의 변화

#### (1) 새로운 규제개혁 전담부서의 설립

본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업무의 전반을 총괄하고 진행시킬 전담부서로서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기구인 규제개선집행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의 설립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규제개혁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기구로서 공무원이 의장을 맡고 있었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규제영향국(Regulatory Impact Unit)의 업무는 모두 규제개선집행국(BRE)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기구에서는 각 정부유관부처별로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 (2) 규제기관의 축소

본 보고서에서는 규제기관의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 “Recommendation 28”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향후 2년에서 4년에 걸쳐서 63개의 국가기관 중에서 31개의 기관을 7개의 분야를 규율하는 기관으로 통합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Recommendation 29”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



용인 통상산업부 산하의 기업조사사무국(Companies Investigations Branch)가 기업파산청(Insolvency service Agency)으로 통합되었다.

### (3) 규제기법의 정밀화

본 보고서에서는 네덜란드식 규제모델이라고 하는 행정부담 완화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험에 기초한 규제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기업조사와 같은 행정부담이 많이 가해지는 규제는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낮고 규제준수와 순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상당한 수치의 행정부담 감소와 규제대상자들의 업무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4) 행정처리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규제완화

기업조사와 같은 행정처리에 대한 서식의 간소화를 본 보고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시해야 할 규제당국과 규제대상자들간의 정보교환 및 의사전달의 시스템 강화를 수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 V. 규제개혁을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

앞에서 언급한 보고서 이외에 규제개혁을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① 정부·사업체간 의사연락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② 행정비용의 감소를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 ③ 정부부처간 및 의회간의 제휴를 통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④ Code of Practice의 운용을 거론할 수 있다.

### 1. 정부·사업체간 의사연락의 효과적 운영

영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의사교환과 연락에 관하여 어떠한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규제의 준수가 어떠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규제에 대한 준수율과 순응율을 높이고 일반 대중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고려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부는 수립함으로써 사업체간의 의사연락을 강

화하려 하였다.

- ① 사업체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의 시행에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② 규제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업체들과의 의사연락을 강화한다.

이러한 규제대상인 사업체들과의 의사연락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정부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 최소한 12주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는 전체 경우에 있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즉,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들이 새로운 규제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이른 시기에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체들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규제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BERR은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와 이와 관련된 제3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규제에 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규제의 질적향상과 사업체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의 제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려 하였다. 특히, BERR은(새로운 Code of Practice on Good Guidance를 포함하여) 입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부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높은 품질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전이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품질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인정된다면, 12주라는 가이드라인에 관한 기한을 강화 및 조정하는 입법도 시도될 것이다.

높은 품질과 효율적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① 입법절차상의 구조나 정부부처간의 구조 보다는 사업수행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한다.
- ② 최종수요자(실수요자)에게 발생하는 결과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 ③ 사업체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④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지에 관하여 사업체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들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및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 ⑤ 규제대상자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 ⑥ 권위가 있어야 한다.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단순한 목록으로서 활용가능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신뢰를 주어야 한다.
- ⑦ 신속하게 발행되어야 한다. 시행되기 12주전에 발행되어야 하고, 새로운 규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의사연락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사안은 규제 의 동시개시일(Common Commencement Dates, 이하 CCDs)에 관한 사안이다. CCDs는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규제가 산발적으로 다른 일자에 시행되는 경우에 이를 동일한 날로 시행일을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개시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이 규제변화를 준비하는데 보다 더 용이하게끔 해주었다. 그러나 정보가 CCDs에 맞추어서 전달되고 보급되는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 Regulation and Business Advice보고서는 CCDs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에 관한 일련의 개선방안 그리고 보다 많은 사업체들이 정보입수를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였다.

또한, CCDs와 관련하여, BERR은 기타 다른 무역관련 단체와 제휴하여 실질적으로 규제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들의 수를 증가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다른 기관과의 제휴는 CCDs의 적절한 일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업체간의 의사연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22)</sup>

## 2. 행정비용의 감소

영국정부의 행정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의 기초는 “Hampton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Hampton보고서”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규제비용에 포함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규제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Hamp-

22) 규제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체와의 의사연락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사업체들이 자문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규제자문의 비용을 일반적으로 추산하여 이를 10%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년 사업체에 대하여 1억 4천 4백만파운드의 저축을 가능하게 한다.

ton보고서”에서는 행정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 규제비용과 행정비용의 개념

Hampton 보고서 상에서는 “규제비용”과 “행정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규제비용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정책비용(Policy Cost)으로서, 이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예를 들어,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비용과, 새로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장과 같은 설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도 될 수 있다. 둘째로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으로서, 이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 또는 사업체들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규제당국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서식을 작성하는 것도 행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정책비용의 수용가능한 수준에 관한 결정은 달성하려는 규제의 목적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행정비용은 간접비적인 성격이 강하며, 효율적인 규제집행을 달성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대기오염정화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환경론자와 산업론자들의 의견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양측 모두 감시감독을 위한 문서작성 등에 관한 비용이 요구되는 적절한 위험평가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 (2) 행정비용의 구체적 내용

행정비용은 다음과 같은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라고 하는 공식에 의하여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제시된다.

$$\text{Administrative Activity Cost} = \text{Price} \times \text{Quantity}$$

$$\text{Price} = \text{tariff} \times \text{time}$$

$$\text{Quantity} = \text{population} \times \text{frequency}$$

Tariff :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들에 대한 임금비용(간접비,<sup>23)</sup> 비임금비용 포함), 외부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을 위한 시간당 비용

Time : 행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총량

Population : 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총수

Frequency : 매년 완성되어 수행되어야 할 행위의 빈도



		Price (Tariff X Time)		
		High	→	Low
Quantity (Pop. X Freq.)	High	Very High Impact	High Impact	High Impact
	↓	High Impact	Medium Impact	Low Impact
	Low	Medium Impact	Low Impact	Very Low Impact

행정비용은 사업체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데 소비되는 시간과 임금비용에 관련을 갖는다. 또한 행정비용은 규제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수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빈도에 의하여 배수로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은 모델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량적인 수치로 행정부담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아래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규제부담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며, 상대적으로 어느 정부부처가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수의 규제대상자에 영향을 주고, 높은 비용이 소비되는 규제는 전체적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는 그들의 규제행위가 이러한 규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낮은 비용과 적은 수의 사업체에만 해당되는 규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행정부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측면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향력이 낮은” 영역에서도 규제감소와 관련하여 사업체의 높은 마찰적 요소(business irritation)가 존재한다면, 행정부담의 감소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규제의 경우, 특정한 집단과 분야에 대해

23) 간접비(Overhead)란, 개별적인 고용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지출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한다. ① 임대나 건물감사상각과 같이 전제가 되는 비용, 전화, 난방, 시설장비과 같은 비용과 같이 고정적인 행정비용, ② 질병 등에 의한 노동의 공백, ③ 고용주에 의한 국가보험

여는 비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rocess)의 진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 및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규모 규제대상자나 분야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높은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개별 사업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집행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정부부처간의 전체적인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수단과 규제대상인 사업체 집단의 입장에서 규제영향이 체감되는 수단간의 균형잡힌 운영에 주목하고 있다.

### (3)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행정비용의 감소

위에서 언급한 모델을 기초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 입법 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한 행정부담을 감소할 것인가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네가지 영역에서의 사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가지 영역 중의 어느 한가지에 대한 감소는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의 직접적인 감소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각 정부부처의 행정부담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두가지 이상의 변수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상수(population)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빈도(frequency)를 증가시키는 경우 등) 전체적인 변화의 순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상 두가지 변수의 변화는 서로간에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변수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재차 고려해야 한다.

#### ① 대상수 (Population)

대상수는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체의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 (i) 특정한 요건이 적용되는 기준을 상승시키는 방법
- (ii) 규제의 적용범위를 변화시키는 방법

Better Regulation Task Force에 의하면, 적용기준을 단순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체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오히려 사업체가 일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문제되는 적용기준의 정도는 종종 EU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쓸모 없는 규제와 정보의무<sup>24)</sup>가 정책적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거될 수 있는가?
- 특정한 규모 또는 영역에서의 사업집단에서 향상된 목표가 정보의무를 제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가?

② 규제빈도(Frequency)

규제빈도는 사업체가 1년동안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보에 관한 일정한 양식을 제출하거나 조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감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이 있다.

- (i) 사업체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할 정보에 있어서, 제출빈도를 감소시킨다.
- (ii) 조사감독을 위한 위험근거 접근법을 채택하여 일정한 집단의 빈도를 감소시킨다.

다만, 단순히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단순히 각각 분기에 해야 할 분량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간 한번에 해야 할 일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분기요건을 폐지하고 대신에 연간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요 고려 사항)

- 정보가 요청되는 시간적 차이가 증가될 수 있는가?
- 일정한 집단에 대해서 빈도가 낮아질 수 있는가?

(주요 고려 사항)

- 정보제공에 있어서 주어진 서식에 관한 요건이 감소될 수 있는가?

24) 정보의무 (Information Obligation)란, 감사나 지도 또는 검사와 협력 또는 업무허락을 한 자들에 대하여 정보의 준비와 수집뿐만 아니라, 정보를 조달하거나 준비해서 연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정보의무는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최근에 개정된 규칙들에 나타나있는 규칙적인 요건을 포함한다. 사업체는 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상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 중복된 정보요건<sup>25)</sup>을 담고 있는 서식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통합 또는 단축될 수 있는가?
- 서식이 완성하기에 용이하도록 향상되어 고안될 수 있는가?
- 온라인에 의한 제출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전자정보에 의하여 정부와 사업체간의 정보운영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가?
- 향상된 자문과 가이드라인이 규제와 정보요건을 이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가?
- 사업체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적 견적(pro-formas)이 제공될 수 있는가?
- 정부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체들이 동일한 정보를 한번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개념에 대한 기준이 도입될 수 있는가?

### ③ 시간(Time)

시간은 사업체가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의미한다.<sup>26)</sup>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i) 사업체가 요건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서류양식을 쉽게 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등)
- (ii) 평범한 용어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
- (iii) 소규모 회사에 대한 특정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예를 들어 사업체가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토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정부부처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을 조망할 수 있다)

25) 각각의 정보의무는 사업체가 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상당수의 다른 정보 또는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를 의미한다.

26) 시간비용에는 외부적인 시간 비용 (External Time Costs)과 내부적인 시간비용(Internal Time Cost)이 포함된다. 외부적인 시간비용이란, 일부 경우에 있어서 사업체는 용역제공자에 의한 행정행위에 관한 사안을 외부사업자를 통하여 외주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러한 용역제공자를 지칭하여 외부용역제공자(External Service Provider)라고 하며 이들에 의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평가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의 양, ②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다양한 외부용역제공자에 대한 시간당 비율. 한편으로 내부적인 시간비용(Internal Time Cost)이란, 정보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업체들이 소요하는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양한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관련업체의 집단 각각이 평균적으로 이용되는 수치를 의미한다.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ASHE)에서 산출된 관련 업체의 집단에서 시간당 비용에 근거하고 있다.



(iv) 사업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생산하는 방법 (사업체들의 예상에 관한 명확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과잉준수를 예방할 수 있다 - 이른바 Regulatory Creep현상)

④ 비용(Tariff)

비용은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간접비(overhead)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비용도 포함한다.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소될 수 있다.

- (i) 행정행위의 수행이 요구되는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급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요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
- (ii) 대안으로서, 요건을 단순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누구나가 전문가와의 계약없이 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고려 사항)

-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의 단순화가 전문가들의 관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 사업체들이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와의 계약을 필요로 하는 범위 중에서 제거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는가?

(4) 행정비용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영국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행정비용감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다음 도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제거, 감소, 통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제거</li> <li>- 규제에 있어서 대안의 활용</li> <li>- 규제에서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제거</li> <li>- 의무로부터 이해관계자가 속한 집단 또는 분야의 면제</li> <li>- 이차적인 입법과 요건에 관한 통합</li> <li>- 규제용어의 단순화와 복잡성의 축소</li> </ul>
-----------------------	--

규제준수를 위한 절차의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형식, 조사, 정보요청의 제거</li> <li>- 서식작성에 대한 시간의 축소</li> <li>- 자원의 우선순위화</li> <li>- 정보요청 빈도의 축소</li> <li>- 기타 정보의무와 관련된 정보요청과의 조화</li> </ul>
정부의 정보 공동공유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이외의 기타 다른 정부단체로 부터의 정보 수집</li> <li>- 이해관계자의 ICT시스템에 의한 직접적인 정보수집</li> <li>- 이해관계자를 위한 One-Stop-Shop 시스템 구축</li> <li>- 입법에 있어서 기준에 관한 정의의 개발</li> </ul>
인터넷기술에 기초한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요청과 양식에 대한 개발</li> <li>- 관련없는 정보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서식 개발</li> <li>- 이해관계자들이 서로간에 협력된 정부포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one-stop-shop 시스템의 구축</li> </ul>
개선된 가이드라인과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더 향상되고 접근가능한 가이드라인의 개발</li> <li>- 유사한 용어에 의한 가이드라인의 정비</li> <li>- 가이드라인상 규정된 자발적 규정에서 의무적 내용의 분리</li> <li>- 공공분야 포털과 연계되어 온라인상에서 이용가능한 규정의 제정</li> </ul>

### 3. 정부부처 및 의회간의 제휴

BERR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부처간의 규제기관들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의회와의 협력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처간 및 의회간의 제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 ①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의 수행에 관하여 전체적인 조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한다.
- ② 규제당국과 조사관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위험에 기초한 방법의 규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의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원은 규제개혁위원회(Regulatory Reform Committee)를 운영하면서, 광범위한 사안을 위탁하고 있다. 상원은 규제당국의 수행을 평가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하여 환영하는 입장이며, 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의 주요 일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하여, 의회 양원에 있는 위원회의 주요 위원들과 협력하려 하고 있다.

#### 4. Code of Practice의 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규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규제부담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였으며, 사업체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단순화 계획들을 채택하였고, 주로 이러한 움직임은 행정적인 부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으로 영국 정부는 Code of Practice(the Compliance Code<sup>27)</sup>)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이것은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Hampton보고서상의 원칙으로서, 책임성 있으며, 일관성있고, 투명한 방법으로 규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Code of Practice의 초안은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제기법을 채택하고, 수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며, 바람직한 규제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최소한의 부담만을 수반해야 한다는 규제당국으로서 지켜야 할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이미 일부 규제기관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Communication Act 2003”은 OFCOM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Communication Act 2003”에 의하면, OFCOM에게 ① 규제부담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데 적절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고려, ② 불필요한 부담의 부과를 지속시키지 않는 규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보고서의 발간, ③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보고서의 발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규제기관에 대하여 OFCOM에게 부과한 의무와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에 있어서 의회의 이차적인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의무를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기관과 정부의 협력이 예상된다 할 것이다.

27) The Regulators' Compliance Code.

그러나 Compliance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목적인 바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는 신뢰에 있어서 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제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새롭게 부과된 의무로부터의 혜택은 사업체와 같이 규제대상이 되는 집단이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사업체들은 부담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담은 감독에 대한 준비 또는 영업형태의 변화에 대한 비용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업체들의 일상적인 업무로부터 불필요하게 생산자원을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실행 및 도입과 관련된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규제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sup>28)</sup>

## VI. 요약 및 결론

“Hampton보고서”와 “Less is More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규제개혁 현황은 다음 도표의 내용과 같다.

### ※ “Hampton보고서”와 “Less is More보고서”에 기초한 영국의 규제개혁 현황

1. 현재 존재하는 규제에 대한 단순화 추진 - 정부의 개별부처는 2010년까지 사업체와 규제대상단체에 대하여 부담되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을 25%까지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단순화계획(simplification plan)을 수립하였다.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에 대한 감소는 20 억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미 추산되었다.

28) 최근에 있어서는 Code of Practice의 운용이 일반 규제대상자인 사업체들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 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선생, 간호사, 경찰 등)에게 있어서의 규제영향은 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래서 BERR은 공적인 분야에 있어서 조직들의 기능에 대하여 Compliance Code의 원칙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른 정부부처에 의하여 실행되는 제정법과 규제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조직들에 대한 Code상의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검토가 된다면,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Compliance Code가 적용되는 사업체들과 마찬가지로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가 제공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규제개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에 발표된 규제개선을 위한 Public Sector Strategy와 정부에 의하여 수립된, 조사관 지위수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에 기초로 제공되었다.



2. 정부부처와 규제당국은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를 실시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적정성을 가지며 근거자료에 기초할 것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BERR은 정부가 제안된 정책에 관한 규제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각 정부부처가 정책을 개발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 등을 제공하였다.
3. 유럽의 규제개혁 일정과 관련하여, EU법상의 행정부담 감소에 있어서 25%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회원국 간의 협정을 준수하였다.
4. 공적 분야와 사적 분야 그리고 제3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정보의 확보 - 규제대상인 사업체와 단체들이 규제단순화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수단은 자문과 조사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5. 정보공유와 평가에 있어서 위험에 기초한 접근법(risk-based approach)과 규제기관의 통합 등을 통하여, 관련 조사와 시행과정의 합리화를 추구하였다. 향후 3년에 걸쳐서 31개에 달하는 국가규제기관은 7개로 통합될 예정이다.
6. 규제당국은 Philip Hampton에 의하여 제시된 위험에 기초한 접근법에 상응하는 일련의 현대적이고 탄력적인 규제기법의 이용을 확보하였다.
7. 규제대상중에서 규제준수에 관하여 순응적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정부의 규제개선국(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이 규제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의 수준에 맞는 규제의 일관성과 질을 향상시킨다.
8. 지방당국에 있어서 조사활동 및 규제대상자들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Retail Enforcement Pilot"<sup>29)</sup>의 운영이 70개의 지방당국에서 추진되었다.
9. 지방규제당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영역에서의 우선순위결정에 있

29) "Retail Enforcement Pilot"란, 규제에 관한 서비스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증진시키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규제개선집행국(BRE)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즉, 규제준수가 양호하며 규제순응적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독을 감소시키고, 결합된 지방기관들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이 높거나 규제위반이 잦은 사업체에 규제를 집중시킴으로써 소비자와 피고용인들에게 보다 개선된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건강과 안전, 주류판매, 거래기준, 환경보호, 소방안전 등에 있어서의 규제기관들이 서로 제휴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인 연락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의 영역과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에 의하여 다양한 사업체간에 발생하는 규제위반의 위험을 평가하고 운용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규제위반이 높은 사업체를 선별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어서, 독립적인 평가였던 Rogers 검토(Review)<sup>30)</sup>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0. Hampton 실행 검토(Hampton Implementation Review)를 도입하여, 국가회계사무국(National Audit Office, NAO)은 BERR 및 규제기관의 업무를 검토하는 규제당국과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하여 규제개혁업무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주요 규제기관은 일정한 시점까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안을 검토받게 된다.
11. 서비스 조달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부담들을 확인·제거함으로써, 정부부처간의 교차프로그램(cross-government programme)을 통한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선을 시도한다.
12. 공공분야에 대한 감시·감독의 방법을 변경하여, 위험에 대한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검사업무의 직위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중복적인 규제를 제거한다.

위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국의 규제개혁은 상당한 기간동안 정책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규제개혁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였던 2개의 보고서는 철저한 사전적인 연구와 통계조사 그리고 각 분야의 자문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현재 영국에서는 본 보고서들에서 취급하지 않은 분야와 사안은 추후에 계획되는 다른 보고서와 추가적인 연구작업으로 보완될 것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 규제개혁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 결과만을 시사점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개혁의 진행 그리고 결과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형성까지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것이다.

영국 규제개혁의 특징중의 하나는 규제기관의 통합화이다. 이러한 기관의 통합화는 거의 모든 국가의 규제개혁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투입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관개편작업을 했다는 점이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효과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분야를 정밀하고 엄격한 분석을 통하여 획정을 한 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통

30) Peter Rogers, National Enforcement Priorities for Local Authority Regulatory Services, Better Regulation Executive (March, 2007)



합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시사점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영국 통합기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의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친 연구결과와 입법경위를 거쳐서 2001년 통합금융법 제정의 근거로 하여 통합된 증권·금융감독기관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개혁작업이 아닌 정부부처와 실무계 등의 의견교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었다.<sup>31)</sup>

한편으로 영국 규제개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네덜란드식 접근방법에 의한 행정부담의 감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부담의 감소에 관한 계획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국가의 규제개혁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영국의경우가 차별되는 점은 단순한 행정부담의 감소만을 위하여 무분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통계조사와 개량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신뢰성 높은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최우선적인 규제개혁의 선행과제로 중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정부담의 감소를 위한 방법과 규제기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규제기법의 시행 전에 사전적인 영향평가방법과 평가 도구의 개발을 우선할 것을 규제당국에 대하여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의 규제개혁이 제시하는 시사점으로 규제도입과 규제개혁의 문제를 규제당국의 입장을 위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31) 1997년 5월 1일 블레이 수상은 재무장관을 통해 금융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s Board; SIB)에 새로운 감독제도 구상을 만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SIB는 1997년 8월 “금융규제시스템의 개혁(Reform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한다. 이에 따라 1997년 10월에 바로 개혁에 착수하여 SIB를 FSA로 개칭하였으며 FSA는 실질적인 감독기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98년 6월 1일에는 개정된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이 시행되었고, 영란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이 FSA로 이관되었으며 이 개정을 통해 1998년 12월 말 FSA 산하의 기존 9개 규제감독기관들을 통합·이관하게 되었다. IMRO, PIA, SFA 등 통합기관의 직원들은 FSA로 자리를 옮겼고, 이와 같은 공인 자율규제기관들은 금융서비스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법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FSA는 1999년 1월부터 해당 규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주택대부조합, GLBA, 보험회사에 관한 감독책임을 보유하고 행사하게 되었으며, 영란은행의 책임 하에 있던 은행, 외환, 파생시장, 광·금속물 시장에 관한 감독역할도 인수하였다. 증권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기구 직원뿐 아니라 자율규제기관인 SFA, IMRO, PIA도 운영인력 및 기능을 FSA로 이관하였고 특히 로이드도 FSA의 산하로 들어왔다. 입법과정을 보면, 1998년 6월에는 FSMA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2000년 6월 14일 Royal Assent를 받아 공포되었고, 2001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1986년 영국 금융시장의 빅뱅 전후로 입법된 일련의 기존 법률(the Credit Union Act 1979, the Insurance Companies Act 1982, the Financial Services Act 1986, the Building Societies Act 1986, the Banking Act 1987, the Friendly Societies Act 1992)을 정리·폐지하고 단일한 금융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를 세우게 되었다.

산업계의 의견과 입장 그리고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른바 “맞춤형 규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취급한 사안은 규제 당국과 산업계와의 의사교환과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공청회라든가 입법설명회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연락시스템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전자통신에 기초한 의사연락시스템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끔 예산과 인력 확충의 문제도 중요한 규제개혁의 전제로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과 규제기법도 사실상 유사한 점이 많이 나타난다. 훌륭한 모델을 전격으로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많은 국가들이 규제개혁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사점을 종합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는 규제기법과 제도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과 기초기반의 마련은 그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고유한 규제개혁의 방법도 있으면 외국의 선진 모델을 도입한 규제개혁 방법이 있지만, 모두 공히 해당되는 사안은 이러한 규제기법의 도입 이전에 철저한 사전적 평가작업과 개량적인 결과물의 기초로 추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혁준,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I) - 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8)
-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gulation - Less is More :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March 2005)
- Ipsos MORI, Businesses' Perceptions of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Executive (2007)
- Michael Gibbons, Better Dispute Resolution - A Review of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in Great Britain (March, 2007)
- Peter Rogers, National Enforcement Priorities for Local Authority Regulatory Services, Better Regulation Executive (March, 2007)
- Philip Hampt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March 2005)
- Warning : Too Much Information can Harm, joint Better Regulation Executive and National Consumer Council report (2007)